

거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

의안 번호	2002 - 54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2. 11. 30. 제 출 자 : 수도사업소장

■ 제정이유

- 군민에게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막연한 불신감을 해소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단체·학계·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
■ 주요골자

-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12인 이내로 함(안 제3조)
- 위원회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 함(안 제5조)
- 수질검사 결과의 공표는 군에서 발행하는 공보, 지방일간신문, 거창군홈페이지 등에 함(안 제9조)

■ 제정근거

- 수도법 제19조의2
- 2002년도 먹는물 수질관리지침 시달(수질58442-10501, '02.3.29)
-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활성화 방안 시달(수질65460-11418, '02.9.10)

거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수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상수원·정수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결과 공표
2. 상수원·정수의 질에 대한 문제점 및 수질향상 자문
3. 상수원수 오염과 관련된 제반 감시 활동
4. 기타 상수원·정수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

제3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.

③ 위원은 군의원, 언론인, 학계, 환경관련단체, 수도사용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, 간사는 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, 서기는 수질담당주사로 한다.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4조 (위원장의 임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 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 (위원의 해촉)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
2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
3. 기타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제7조 (의견의 청취) 위원회는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8조 (수질검사) ① 수돗물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는 매월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.

② 수질검사 대상·건수·항목·방법 등은 관계법령을 준용하며 수질검사는 수도사업소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측정이 불가능한 항목에 대하여는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수 있으며, 위원장이 수질검사기관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.

제9조 (수질검사 결과의 공표) 수질검사 결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공표한다.

1. 군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공보
2. 경상남도내에서 발행되는 지방일간신문
3. 거창군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
4. 기타 군민이 알 수 있는 적당한 방법 등

제10조 (수질검사 결과 공표시 명기사항) 수질검사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군민들이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등에 대한 의문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와 관리책임자를 실명으로 명기한다
2.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는 채수지점의 주소를 표기한다
3.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의 표기는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 표기한다

제11조 (활동경비등) 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, 위원회 참석수당, 수질검사비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